

2002년도

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사업 신청요강

2002. 2

한국학술진흥재단

I. 사업목적

신진교수들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로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며, 국제적 연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II.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0,500백만원

2. 기본방침

가. 연구역량 및 창의성이 우수한 신진교수 발굴 및 지원

- 1) 연구업적평가 실시
- 2) 신진교수들의 창의적 연구과제 발굴

나. 연구자 중심으로의 전환(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 소액다수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집중지원을 통한 효율성 있는 지식생산 창출

다. 연구와 교육과의 연계 강화

- 1)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학부생(3, 4학년)도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시켜 연구와 교육을 연계시킴
- 2) 연구결과를 강의 등 교육에 적극 활용 유도

라. 패널중심의 심사제도 구축

-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신청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심사 유도
(우송심사의 장점 내재화)

마. 연구결과의 공유 및 사회화 확산

- 1) 중간발표 : 연구기간중 성과를 심포지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
- 2) 연구결과의 대중화 :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요약문을 작성·제출토록 함

3.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나. 지원대상 : 단독연구(신청자격 참조)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과제당 2,000만원 이내

※ 연구비 산정 기준은 **【붙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 신청연구비에 대한 심사강화로 적정 연구비 지원

☞ 연구비산정·집행기준표는 A유형과 B유형 중에서 연구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나. 지원기간 : 1년

Ⅲ. 공모 및 신청

1. 공모 방법

- 대학의 총(학)장에게 공문발송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공고

2.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전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 코너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하고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가. 온라인 신청

- 1) 신청방법 : 연구자가 재단의 홈페이지(www.krf.or.kr)에 접속하여 신청함

2) 신청(입력)내용 :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화면을 온라인 신청기간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임.

3) 신청기간 : 2002. 3. 15(금) ~ 3. 20(수) 18:00 까지

나. 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연구계획서와 연구업적물은 별첨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해 일괄신청

2)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 7부

- 연구업적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2편)에 대하여는 동 연구업적이 게재(출판)된 학술지(저·역서)의 표지, 목차, 연구업적서지사항(재단소정 양식) 각 7부(각각의 연구계획서에 첨부)

- 전임교원 경력확인서 (재단소정양식) 1부

3) 제출기한 : 2002. 3. 28(목) 18:00까지

※ 연구계획서상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접수번호와 과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과제번호는 2002. 3. 21(목) 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 최초 대학교원 임용 5년 이내인 국내대학의 소속교원

※ 임용기간 산정기준은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전임교원 임용기간임(타교전 임 경력포함)

- 학교의 공식 절차에 의해 임용된 교원(기금교수, 연구교수, 계약교수 등 포함)

☞ 계약교수 등 임용기간이 명시된 교원의 경우 신청 대학교에서 연구결과보고 완료까지의 연구비 및 연구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타대학으로 소속변경시 관리지침 준용)

나. 신청요건

- 199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등록완료된 외국특허) 및 출간된 전문학술 저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2편이상인 연구자

· 연구업적 산정시 단독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1편으로 인정)

▷ 신청요건 예고 ◁

2003년부터는 신청자의 연구업적요건을 최근 5년 이내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문적 가치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실적을 5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 인문·사회계열(예술·체육계열 포함) : 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또는 A&HCI,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반드시 1편이상 포함되어야 함 (단, 단독저서 및 역서 1편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연구업적 산정시 단독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1편으로 인정)

- 자연계열 : SCI급(SCI 및 SCIE 등) 국제학술지 게재논문(등록완료된 외국특허 포함)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대학 및 연구소(기관포함)에서 발행된 학술지 중 재단등재(후보)학술지 및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 등급부여조사연구결과 A, B급에 포함되지 아니한 학술지는 전국규모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4.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포함)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2000년이후 지원과제는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2002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및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과건 수혜자
- 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사업으로 수혜받은 연구자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사업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2.12.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 계 별	심 사 내 용		비고
1 단계	행정요건심사	신청자격 여부	재단
2 단계	업적 및 전공심사	-연구업적평가 (20점) -계획서 전공심사 (80점)	패널심사단
3 단계	종합심의	예산배정 및 과제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 (2단계 심사 가부 결정)

나. 제 2 단계 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 심사주관 : 패널심사단
- 심사내용
 - 연구업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
 - 연구계획서의 전공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 10개 항목 100점

심사구분	심사항목	비고
I.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연구참여자의 선택연구업적의 수준	
II. 연구목적에 대한 평가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선행연구와의 연계성(관련성)	
III.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논리성	
	참고문헌의 적정성	
IV.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평가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의 활용도	

☞ 적정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서 패널심사시 실질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조정

다. 제 3 단계 심사 (종합심의)

- 주관 : 재단
- 조정내용 : 분야별 예산배정, 과제별 연구비 조정
- 선정원칙 : 패널심사 점수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과제 선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고 여타 연구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결정액 지급

다. 연구비사용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집행토록 함.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연구 중간 발표

1. 발표시기 : 연구개시후부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2. 발표방법 : 발표형식은 제한없음(학회, 대학자체, 인터넷, 기타 학술토론장 등)

※ 연구자는 연구수행중의 중간발표보고서(재단 소정양식)를 결과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VII. 결과보고 및 평가

1.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

나. 제출자료

- 1) 중간발표보고서(재단소정양식) 1부
- 2) 연구결과보고서(재단소정양식) 7부
- 3) 연구결과개요보고서(연구비집행정산내역 포함) 1부
- 4) 연구요약문(국·영문) 1부

※ 국문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1)~4)의 자료는 한글 버전 3.0 이상 또는 MS워드 작성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연구비 환수 및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포함)지원에 대하여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절행위 등)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2.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가.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에 대한 책무

최종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인문사회계열(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	자연계열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SCI&SCIE급) 학술지
-전문학술저서	

나.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후 6개월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

다.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3-○○○○○○○).”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2-003-○○○○○○○).”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

라.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최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포함)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함

3. 연구결과의 사후 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
 - 연구결과논문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파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국가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특허법 제 29조)

VIII.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청과제 책임연구자의 소속대학(교)

단, 아래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학회 등 기타기관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학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 D등급 대학

2. 지원방법

가. 지원기준

- 2001년도 연구비 중앙관리실태조사 평가등급 적용
 - A, B, C등급 차등 지원

나. 지원비율

- A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13% 지원
- B등급 대학 : " 10% 지원
- C등급 대학 : " 5% 지원

3. 지원 시기 : 선정연구비 지원시 대학으로 일괄 송금

IX. 슈퍼컴퓨터 활용 안내

우리재단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의 “학술활동 공동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재단의 연구과정 수행자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일정 자원량(재단과 KISTI가 협의하여 결정)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해당분야

- 전학문의 슈퍼컴퓨터 응용계산 과학분야

2. 활용방법

- 연구계획서상에 슈퍼컴퓨터 응용분야 활용여부를 기재한 후 과제선정 후,
 - KISTI 슈퍼컴퓨팅센터의 슈퍼컴퓨터 활용시 재단과 KISTI와의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활용함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는 연구비 산정시 전산사용료에서 슈퍼컴퓨터 사용료를 계상할 수 없음
- 선정과제중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들은 연구목표 달성에 적정한 슈퍼컴퓨터 사용량을

KISTI에 별도로 제안하여야 함.

※ 단, 슈퍼컴퓨터 활용여부가 과제선정 및 연구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활용절차

- 과제신청시(온라인신청 포함) 슈퍼컴퓨터 활용여부 확인(신청자) → 과제선정 → 선정과제 KISTI로 통보(재단) → 연구자와 KISTI의 접속(선정자) → 연구진행

X.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에서 정한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제출 및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1팀

TEL (02)3460-5573~5 FAX (02)3460-5580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A 유형)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 수당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생(3~4학년)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② 연구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1인당 연 300만원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사용료, 해외기술 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③ 직접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 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B 유형)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생(3~4학년)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② 연구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1인당 연 300만원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 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③ 직접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재료구입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 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양식 #1>

※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 과제번호	온라인 신청마감 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계획서

(사업명 : 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신청연구비	천원		
연구책임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소 속 :		

☞ 연구계획서 7부중 겉표지(현재 페이지)는 1부만 붙이고, 나머지 6부는 겉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십시오.
--------	--

※ 과제번호	온라인 신청마감 후 부여 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신청연구비	천원	

☞ 연구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I. 연구계획

※ 연구계획은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5쪽 내외로 기술하십시오.

☞ 본 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연구주제와 선행연구와의 체계적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논리성 및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3.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의 활용 방안 등)

4.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해외출장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5. 참고문헌

6. 증빙(별첨)

※ 기관장의 직인이 들어간 교원경력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겉표지가 포함된 계획서 1부에만 첨부)

Ⅱ. 연구수행계획

1. 연구추진계획

년 월 일	연구수행내용	비 고
2002. 7		
8		
9		
10		
11		
12		
2003. 1		
2		
3		
4		
5		
6		

2. 신청연구비

- ☞ 신청연구비 산출내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신청연구비 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신청요강의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기준표는 A유형과 B유형 중 연구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 연구비를 과다 산출된 경우에는 연구비 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정연구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2>

※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십시오.
--------	--

※ 과제번호	온라인 신청마감 후 부여 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연구업적서지사항

(2002년도 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사업)

업적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국제특허()
논문(저·역서, 특허) 제목	
학술지 구분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교육부 학술지등급부여 A/B등급() A&HCI 또는 SSCI급(), SCI급(), 기타()
학술지명	
발행연도(권/호 포함) 또는 특허출원일	
발행(출판)기관 또는 특허 출원국가	
SCI Impact Factor	(※ 자연계열만 기재, 최근 발표된 JCR 기준)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역할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 연구자는 본 서지사항을 On-line 신청시 선택한 연구실적물 2편에 대하여 각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택업적의 표지와 목차 사본(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삭제)은 본 요약문에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함

<양식 #2>

교원 경력 확인서

성명 : _____ (인)

임용대학	임용기간	경력	비 고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개월	
계		총 년 개월	

※ 교원 경력은 국내 대학의 전임강사이상 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산출함.

위 신청자의 교원경력을 확인한 결과 신진교수연구과제 신청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학교 총(학)장 (인)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귀 하